
유네스코국가위원회 헌장¹

서문

유네스코 헌장이 명시한 바와 같이, 유네스코는 국제연합 헌장이 세계 시민에게 인종, 성별, 언어 또는 종교의 차별 없이 보장하는 정의, 법의 지배 및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, 과학,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유네스코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에서 지식인 및 과학 공동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.

이를 위해 헌장 제7조가 “회원국은 교육, 과학, 문화와 관련한 자국의 주요한 단체를 이 기구의 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자국의 형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그 조치로서는 정부 또는 이러한 단체를 널리 대표하는 국가위원회의 설립이 요망된다”고 규정한 것을 고려할 때,

헌장 제7조에 따라 설립된 국가위원회는 자국의 지식인 및 과학 공동체를 유네스코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유네스코의 목표를 더 잘 알리고, 영향을 확대하며 사업 실행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.

총회는 여러 차례, 특히 제19차 총회에서 회원국이 국가위원회를 통해 유네스코의 사업 수립, 실행 및 평가에 더욱 긴밀하게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, 국가위원회를 자문, 연락, 정보 및 집행 기관으로 강화할 것과 국가위원회 간 협력을 소지역, 지역 및 지역 간 수준에서 더욱 촉진할 것을 권장하였다.

총회는 1978년 11월 27일 파리에서 열린 제20차 총회에서 유네스코국가위원회 헌장을 승인한다.

¹ 제20차 유네스코총회(1978) 채택.

제1조 - 목적 및 기능

1. 국가위원회의 기능은 유네스코의 활동에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의 진흥을 위해 일하는 다양한 정부부처, 기관 · 단체 및 개인을 참여시키는 것이다. 이를 통해 각 회원국은:
 - (a)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여 인류 상호 이해와 지식을 증진하고, 대중 교육과 문화의 확산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며, 지식을 보존, 증진 및 확산함으로써 평화와 안전 및 인류의 공공 복지에 기여한다.
 - (b) 유네스코의 사업, 특히 사업 수립 및 수행에 있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한다.
2. 이를 위해 국가위원회는:
 - (a) 정부 및 유네스코의 관할 분야와 관련된 기관 ·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한다.
 - (b) 유네스코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지적, 과학적, 예술적 또는 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, 유네스코의 사업 수립과 수행에서 국가, 정부 그리고 비정부기관 및 다양한 개인의 참여를 장려한다.
 - (c) 유네스코의 목표,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고,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한다.
3. 아울러, 각 회원국의 필요와 준비 상태에 따라, 국가위원회는:
 - (a) 유엔개발계획(UNDP), 유엔환경계획(UNEP), 유엔인구기금(UNFPA) 및 기타 국제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는 유네스코 활동의 계획 및 수행에 참여한다.
 - (b) 정규 사업 또는 비정규예산으로 운용되는 유네스코 직위 후보자 물색 및 유네스코 펠로우십 수혜자 배치에 참여한다.
 - (c) 유네스코와 관련된 공동 연구를 다른 국가위원회와 함께 수행한다.
 - (d) 유네스코의 일반 목표와 관련된 기타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한다.
4. 국가위원회는 특히 사업의 공동 수립 및 실행을 통해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 분야에서 소지역, 지역 및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, 유네스코의 지역 사무소 및 센터와 협력한다. 이 협력은 프로젝트의 준비, 수행 및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공동 조사, 세미나, 회의 및 컨퍼런스, 정보 및 자료 교환, 방문 교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.

제2조 -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국가위원회의 역할

1. 각 회원국은 자국 국가위원회의 책임을 정의한다. 일반적으로 국가위원회는:
 - (a) 국가 기관, 전문가 및 기타 협회, 대학 및 기타 연구 및 교육 센터, 그리고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기타 기관 간의 긴밀한 연락을 촉진한다.
 - (b) 유네스코가 소집한 총회 및 기타 정부 간 회의에서 자국 정부 대표단과 협력하여 회의 업무에 대한 자국 정부의 기여를 준비한다.
 - (c) 유네스코 사업의 발전을 주시하고, 적절한 기관에 국제 협력의 잠재적 이점을 알린다.
 - (d) 유네스코 사업과 관련된 국가 활동에 기여하고,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다.
 - (e) 타국에서 얻은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국내 관심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전파하는 채널을 제공한다.
 - (f) 국가 차원에서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기관 간의 학제 간 대화 및 협력을 장려하여 특정 개발 우선순위에 지적 자원의 활용을 지원한다.

2. 각 회원국의 협이에 따라, 국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:
 - (a) 단독으로, 또는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, 국내 유네스코 프로젝트의 운영 및 소지역, 지역 또는 국제 유네스코 활동의 국가적 참여에 대한 책임을 진다.
 - (b) 총회 또는 기타 회의에서 채택된 결론 및 권고 사항, 또는 연구 및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을 국가 기관 및 협회에 알리고, 국가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비추어 논의를 촉진하며, 필요한 후속 활동을 제공한다.

제3조 -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에 제공하는 서비스

1. 각 회원국에서 국가위원회는 자국 내에서 유네스코의 영구적 존재를 보장하고, 지적 활동 분야에서 국제 협력을 촉진하려는 유네스코의 노력에 기여한다.
2. 국가위원회는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국가의 요구와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정보원으로, 유네스코가 사업을 준비할 때 회원국의 요구를 보다 완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. 또한, 설문 조사 또는 질의가 수행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설문지에 응답함으로써 유네스코의 규범 설정 작업과 사업의 방향 설정 또는 수행에 기여한다.
3. 국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정보를 전파한다:
 - (a) 대중매체와 일반 대중에게 유네스코의 목표,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 - (b) 유네스코의 사업과 관련된 개인 및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한다.
4. 국가위원회는 다음 방법을 통해 유네스코의 사업 수행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 - (a) 국가위원회를 대신한 자국의 전문화된 공동체의 지원을 동원한다.
 - (b) 유네스코의 사업 활동 중 일부에 대한 운영 책임을 진다.

제4조 - 국가위원회에 대한 회원국의 책임

1. 헌장 제7조에 따라, 각 회원국은 국가위원회가 유네스코 및 회원국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위, 구조 및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.
2. 각 국가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교육, 과학, 문화 및 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는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·단체의 대표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전문가 공동체에 속하는 대표자를 포함한다. 위원은 유네스코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부처, 국가기관 및 개인의 지원과 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위직에 있어야 하며, 유능해야 한다.
3. 국가위원회는 상임위원회, 조정기관, 소위원회 및 여타 적절한 부속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.
4. 국가위원회는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이 필요하다:
 - (a) 유네스코 헌장 제7조 및 본 헌장의 규정에 부합하고, 국가위원회에 부여된 책임, 구성원, 운영 조건 및 자원을 명확히 정의하는 법적 지위.
 - (b) 다음을 갖춘 상설 사무국:
 - (i) 고위 직원. 특히 사무총장의 지위는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, 필요한 경험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임명되어야 한다.

(ii) 본 현장에서 명시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,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참여를 증대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재정적 수단.

5. 각 회원국에서는 유네스코 상주대표부와 국가위원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.

제5조 - 국가위원회에 대한 유네스코의 책임

1.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유네스코의 사업 및 활동의 수립, 수행 및 평가에 국가위원회를 참여토록 하고 다양한 지역 서비스, 센터 및 사무처, 국가위원회 사이에 긴밀한 연락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2. 유네스코는 국가위원회의 발전을 촉진하고,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최대한 제공한다.
 - (a)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 국가위원회를 설립하거나 개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을 제공하고, 자문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
 - (b) 신임 사무총장 및 기타 국가위원회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
 - (c) 물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
 - (d) 해당 국가에 방문하는 유네스코 관계자 및 자문위원의 모든 임무와 그 국가에서 계획된 유네스코 활동에 대해 국가위원회에 알림으로써
 - (e) 문헌 및 정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
 - (f) 유네스코의 간행물 및 문서를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, 각색 및 보급 및 자체 간행물 제작을 지원함으로써
3. 유네스코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국가위원회를 통한 활동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:
 - (a) 사업에 포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
 - (b)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, 사업과 관련된 제안을 수립하며, 특정 프로젝트의 공동 수행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위원회가 개최하는 정기적인 소지역 및 지역 회의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
 - (c) 유네스코 직원의 참여를 통해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
 - (d) 소지역 및 지역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을 후속 조치할 수 있는 협력 관계의 수립을 촉진함으로써
 - (e) 국가위원회에서 구축한 연락 체계에 대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
 - (f) 특히 총회 회기와 관련하여 사무총장 회의 구성을 장려함으로써
4. 유네스코는 다음의 지원을 지속하고 강화함으로써 다른 지역의 국가위원회 간의 교류를 장려한다.
 - (a) 특정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하기 위한 전 지역의 사무총장 그룹 회의
 - (b) 국가위원회 사무총장의 지역 간 합동 협의
 - (c) 다른 지역의 국가위원회 회의에 참관인을 파견하고자 하는 한 지역의 국가위원회
 - (d) 다른 지역의 국가위원회가 수행하는 합동 프로젝트 및 기타 협력 활동